



임산부·영유아 건강을 위한 국가영양지원사업

##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신규모집 안내

**영양플러스+**

는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수유부)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, **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** 시켜 드리는 **평생 건강관리형 국가영양지원제도**입니다

### 신청 자격요건

- **대상** : 중구 거주 6세미만 영·유아, 임신·출산수유부
- **소득수준** :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( 소득기준표 참고)
- **영양위험요인 보유** : 영양섭취상태불량,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등
  - ※ 3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
  - ※ 국제결혼자의 경우,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여야 합니다
  - ※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됩니다
  - ※ 임신부의 경우 임신시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 가능

### 영양플러스 제공 서비스

#### 영양교육및 상담

- 빈혈, 저체중, 편식 영양관리
- 올바른 이유식
-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
- 다양한 조리체험교육등

#### 정기적 영양평가

- 신체계측(신장, 체중, 비만도)
- 빈혈검사
- 영양섭취상태
-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

#### 보충식품 지원

- 쌀, 감자, 당근, 달걀, 우유등 I~VI 종의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



### 영양플러스 신청 및 문의

#### 신청 및 방문 예약

- 전화 -

02-3396-6468~9

#### 신청서 작성

- 보건소 3층 영양실 방문-  
키, 체중, 빈혈검사, 영양섭취  
상태, 영양지식 등

#### 자격 판정

- 영양플러스 담당자-  
영양위험요인 / 소득수준등

- ※ 신규평가지 사업설명 시간으로 인해 예약제로 진행됩니다.
- ※ 신규평가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어 영양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
- ※ 서류 미준비 및 대상자가 오시지 않으면 신규평가가 취소됩니다.

## 대상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 기준

〈표 1〉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(기준중위소득의 80% 미만)

2018.9.5 기준

| 가구원 수 <sup>1)</sup>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<sup>2)</sup> |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| 직장가입자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가입자   | 혼합(직장+지역) |
| 2인                  | 71,093                       | 28,306  | 71,729    |
| 3인                  | 92,534                       | 66,634  | 93,488    |
| 4인                  | 113,289                      | 96,000  | 114,676   |
| 5인                  | 133,780                      | 121,332 | 135,529   |
| 6인                  | 155,579                      | 146,158 | 157,275   |
| 7인                  | 175,408                      | 169,062 | 178,231   |
| 8인                  | 196,451                      | 195,456 | 200,032   |
| 9인                  | 219,554                      | 223,642 | 224,067   |
| 10인                 | 240,824                      | 248,058 | 247,890   |

1)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·비속으로 한정

2) 맞벌이가정의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(직장) 본인부담금을 합한금액으로 한다.

3) 임신부의 경우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한다